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 사 업 장 명 : 온맘요양센터(온맘요양원)
- 소 재 지 : 평택시 비전6길, 8
- 전 화 번 호 : 031) 655-1915
- 대표자 성명 : 권 미 선
- 사 업 종 류 : 시설요양사업



온맘요양센터(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① 계약목적 : 온맘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시설에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3.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4.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제2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 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부가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 위생, 목욕 등 신체 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 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월 이용료 부담액은 [첨부1. 당해연도 장기요양비용안내] 와 같게 한다.

제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4조 (계약만료 및 재계약)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계약의 만료로 본다. 장기요양갱신을 통하여 인정서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별도의 계약만료의 의사를 표하지 않아도 인정유효기간의 시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 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해지요건)

① 계약해제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3.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